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1-11

의 정 부 지 방 법 원

제 1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15구합7482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A종교단체 B교회
피 고	[redacted]시장
변 론 종 결	2015. 10. 13.
판 결 선 고	2015. 11. 1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6. 5. 원고에 대하여 한 [redacted]시 C 대 1,635㎡ 및 그 지상 건물 520㎡에 대한 취득세 87,835,010원, 농어촌특별세 8,783,500원, 등록세 35,134,000원, 지방교육세 6,623,850원 합계 138,376,36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1-11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2. 27. [redacted]시 C 대 1,63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 건물 2동 연면적 520㎡(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건물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9. 2. 26.자 증여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7조 제1호, 제12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받았다.

다. 원고는 2009. 5. 15.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하여 [redacted]공사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고, 같은 달 22. [redacted]공사로부터 보상금 합계 2,949,474,960원을 지급받았다.

라. 원고가 2012. 4. 20.경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자 피고는 2014. 6. 5. 원고가 그 사용일로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였으므로 비과세한 취득세, 등록세 등을 납부하여야 한다며,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취득으로 인한 취득세 87,835,010원, 농어촌특별세 8,783,500원, 등록세 35,134,000원, 지방교육세 6,623,850원을 부과·통지하였다(가산세 포함,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2014. 8. 8.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경기도지사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4. 10. 29.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3,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1-11

1) 원고의 담임목사인 D은 당회의 결의를 거쳐 2001. 9.경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경락으로 취득하여 원고에게 증여하였고, 원고는 그 때부터 2012. 4. 20.경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할 때까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교회시설로 이용하여 왔다.

또한 원고는 [redacted]공사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의 협의매수로 인한 보상금을 지급받은 이후에도 2012. 4. 20.경까지 이 사건 건물을 교회시설로 이용하여 왔기 때문에 구 지방세법 제107조, 제127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매각 사실 자체가 발생하지 않았고, 원고의 직접 사용 상태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그 사용일로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였으므로 구 지방세법 제107조 단서, 제127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하는 취득세·등록세 부과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설사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은 날인 2009. 2. 27.부터 사용하게 되었다고 보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더 이상 그 사용목적에 제공하지 못하게 된 것은 원고의 의사에 의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각 부동산이 공공택지개발사업에 포함되어 법률상 그 처분이 강제되었기 때문이므로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

3) 원고는 2009. 2. 27.경 담임목사인 D으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증여받으면서 그 무렵 지방세감면신청을 하였는바, 원고가 취득세·등록세 감면신청을 한 것 자체로서 이미 그 신고의무를 다한 것이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1-11

다. 판단

1) 원고가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였는지 여부

구 지방세법 제107조 제1호, 제127조 제1항 제1호는 제사·종규·자선·학술·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 또는 등기에 대하여는 취득세 또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각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취득일 또는 등기·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 취득세 또는 등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구 지방세법 해당 규정들의 입법취지는 비영리사업의 지속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또는 등록세를 감면해주는데 있다고 할 것인데, 위 규정들에서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한 경우'와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를 병렬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매각'이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의 예시를 규정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오히려 일단 매각이 이루어진 경우 그 이후에 해당 부동산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지 여부는 고려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2005. 5.경 D으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증여받았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갑 제1, 5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09. 2. 26. D으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증여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1-11

있을 뿐이며, 원고가 2009. 5. 13. [redacted]공사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협의매수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달 15.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redacted]공사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으며 같은 달 22. 이 사건 각 부동산의 협의매수로 인한 보상금을 모두 지급받았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원고는, 구 지방세법 제107조와 제127조 제1항의 각 단서에 규정된 "사용일"은 취득일과 무관하게 실질적으로 사용한 날인지를 여부로 판단해야 하므로 원고가 2009. 5. 15. [redacted]공사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줄 당시 증여와 무관하게 실제 사용기간은 2년을 훨씬 초과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각 단서에 의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사용구분에 따라 취득세와 등록세를 비과세하는 것은 당연히 이에 관한 취득을 전제로 하는 것이어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1항 제8호도 직접 사용은 부동산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2009. 2. 26. D으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증여받아 취득한 후 이를 교회시설로 사용하다가 같은 해 5. 22. [redacted]공사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보상금을 지급받음으로써 그 사용일로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구 지방세법 제107조 단서, 제127조 제1항 단서의 취득세 및 등록세 부과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종교 등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등기하여 취득세·등록세가 비과세된 후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한 경우 취득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1-11

세·등록세가 부과되는바, 이러한 경우에도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취득세·등록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정당한 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그 비영리사업자에 의하여 수행되는 업무의 공익성을 감안함은 물론 취득세·등록세를 비과세하는 입법취지, 토지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그 목적 사업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 당해 사업자가 토지를 목적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행정청의 귀책사유가 가미되었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 을 제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토지를 비롯한 그 일원 지역이 2006. 5. 30. E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되었고, 2007. 9. 21. 택지개발사업지구 지정 및 개발계획이 승인(건설교통부 고시 F)되었는데, 구 택지개발촉진법(2009. 12. 29. 법률 제98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에 의하면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경우 당해 예정지구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는 일반적으로 금지되며, 그러한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점, ② 원고는 위와 같은 고시가 있은 후인 2009. 2. 26. D과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증여계약을 체결하였고, 다음 날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점, ③ 그 후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위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인 [redacted]공사 앞으로 2009. 5. 15.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원고는 같은 달 22.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보상금을 지급받은 점 등을 종합하면, 원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1-11

고는 이 사건 토지가 이미 위 택지개발사업지구에 편입되어 그 지상에 건축물을 신축하는 등의 개발행위가 법령상 불가능하다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그 사용일부터 2년 이내에 [redacted]공사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보상금을 수령함으로써 사실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할 수 없음을 받아들인 이상, 위와 같은 법령상 장애사유는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신고불성실가산세 부과가 위법한지 여부

구 지방세법 제120조 제3항, 제150조의2 제3항은 구 지방세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취득세·등록세를 비과세·과세면제 또는 경감받은 후에 당해 과세물건이 취득세·등록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대상이 된 때에는 그 사유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지방세법 제121조 제1항 제1호, 제151조 제1호는 취득세·등록세 납세의무자가 위와 같은 신고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산출세액에 당해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들에 의하면, 원고는 2009. 2. 26.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아 취득한 후에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함으로써 늦어도 그 소유권을 상실한 2009. 5. 22.에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이 취득세·등록세 부과대상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비과세신청과는 별개로 그로부터 30일 이내에 종전에 비과세받은 취득세·등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그런데 원고는 위 2009. 5. 22.부터 30일이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1-11

지나도록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비과세한 취득세 및 등록세를 신고하지 않았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에 대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의 산출세액 이외에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박남천

판사 김윤희

판사 김윤석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1-11

관계 법령

■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7조(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취득일부터 1년(제1호의 경우에는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

1.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

제120조(신고 및 납부)

③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취득세를 비과세·과세면제 또는 경감받은 후에 당해 과세물건이 취득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대상이 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사유발생일부터 30일이내에 당해 과세표준액에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경감받은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를 제외한다)을 공제한 세액을 말한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1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①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11조 및 제1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이하 이 조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 각 호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1.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당해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

제127조(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등기·등록일부터 1년(제1호의 경우에는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1-11

에 대하여 등록세를 부과한다.

1.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에 대한 등기

제150조의2(신고 및 납부)

③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등록세를 비과세·과세면제 또는 경감받은 후에 당해 과세물건이 등록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대상이 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사유발생일부터 30일이내에 당해 과세표준에 제131조 내지 제146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경감받은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를 제외한다)을 공제한 세액을 말한다]을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15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등록세 납세의무자가 제150조의2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30조 내지 제143조, 제145조 및 제1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이하 이 조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 각 호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1. 제150조의2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당해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 끝.